

VIII.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여부(7사례)

- 우리원에서는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및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에 따라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재동기화치료의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4-25호, 2024.2.1. 시행)에 의거하여
 1. 요양기관은 급여기준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다만, 응급을 요하는 시술의 경우 사전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신청서 및 각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의 소집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소집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임.
 3. 사전심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술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실시·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ICD: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 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여부 심의결과 총괄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6사례(승인 5사례, 불승인 1사례)
- 심장재동기화치료(CRT): 1사례(승인 1사례)

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 여부(총 6사례)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에 따라
 1. 가.~파.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1 (남/85세)
 - 신청항목: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경정맥)
 - 심의결과: 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적절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심구혈률(EF) 25% 소견이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바. 1)의 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함.
- 사례2 (남/64세)
 - 신청항목: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경정맥)
 - 심의결과: 불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적절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 소견 관찰되지 않아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바. 1)의 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 신청함.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심구혈률(EF) 35%로 약물 치료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며, 심사 기준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의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하지 아니함(불승인)

- 사례3 (남/78세)
 - 신청항목: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경정맥)
 - 심의결과: 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비허혈성 심부전 환자로, 3개월 이상 적절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NYHA class III, 심구혈률(EF) 28% 소견이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바. 2)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함.

- 사례4 (여/55세)
 - 신청항목: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경정맥)
 - 심의결과: 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수영장에서 걸던 도중 syncope 발생 후 자발적으로 회복되었고 119 통해 내원한 자로, pacemaker interrogation 상 10초 정도의 심실빈맥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 신청함.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interrogation 상 심실빈맥보다는 심실세동으로 판단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함.

- 사례5 (남/71세)
 - 신청항목: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경정맥)
 - 심의결과: 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허혈성 심부전 환자로, 적절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심구혈률(EF) 28% 소견이 확인되며 투석 중 혈압저하로 인해 약물을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임상적 사유와 의무기록이 확인됨.
따라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바. 1)의 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함.

- 사례6 (남/69세)
 - 신청항목: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경정맥)
 - 심의결과: 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2002년 캐나다에서 급성 심장 사망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심전도 상 brugada syndrome pattern 확인되어 ICD 삽입하신 분으로, 이후에도 재발성 심실빈맥, 심실세동이 있었음이 캐나다 의사 소견서 기록상 확인됨.
따라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함.

2.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 여부(총 1사례)

-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에 따라
 1. 가.~다.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1 (남/86세)
 - 신청항목: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 심의결과: 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비허혈성 심부전 환자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저혈압 및 어지러움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로 그에 따른 임상적 사유가 확인되었고 QRS duration 171ms 인 좌각차단(LBBB), NYHA class III, 심구혈률(EF) 30% 소견이 확인됨.
따라서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 1. 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심장재동기화 치료(CRT)의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함.

[2024. 9. 19.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재동기화치료 분과위원회]

[2024. 10. 15. 중앙심사조정위원회]